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인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방역 지침	<p>■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u>적용 해제*</u></p> <p>○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p> <p>*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p> <p>** <u>'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u></p> <p><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p> </div> <p>■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u>적용 해제</u></p> <p>○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p> <hr/> <p>■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u>2022.4.25.(월) 0시부터 해제</u></p>
권고 사항	<p>■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을 계속 적용하며, 4.15. 4.1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p>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 4. 25.(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초기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종)

○ 대상시설: 종교시설 등 31종

-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 ※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취식금지 적용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민),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고척스카이돔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취식금지 미적용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위험장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1부

2) 모임·행사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3)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 내용

- 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②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2022.4.25.부터 시행

붙임3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4) 국공립시설

○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5) 사회복지시설 등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6) 사업장

○ 필요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7) 학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3.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제된 방역지침을 안내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바랍니다.

- 붙임 1.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2.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3.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주무관 유재훈 과장 전결 2022. 4. 19. 김재준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445 (2022. 4. 19.)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일자리혁신과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jaehun9110@oma.go.kr / www.motie.go.kr / 대국민 공개